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15 호 2018. 8. 30(목)

## 조 례

남해군조례 제2312호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조례 제2313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
남해군조례 제2314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18

## 고 시

제2018 - 129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힐링빌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27
제2018 - 130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34
제2018 - 131호	서면소재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38
제2018 - 132호	이동면소재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40

## 공 고

제2018 - 912호	재산공개대상자 주식 매각 사실 공개 공고	41
제2018 - 934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
제2018 - 941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48
제2018 - 94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53
제2018 - 943호	공시송달 공고	58
제2018 - 944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공고	62
제2018 - 954호	남해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3
제2018 - 960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공고	72
제2018 - 966호	소하천정비비행계획의 공고	73
제2018 - 973호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7
제2018 - 975호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82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312호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u>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lt;단서 삭제&gt;</p>
<p>제6조(우선계약)</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두 차례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u>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u></p>	<p>제6조(우선계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p>
<p>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u>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등급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lt;삭 제 &gt;</p>
<p>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p> <p>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p>	<p>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p> <p>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p>

# 남 해 군 공 보

(4) 제 615 호

2018년 8월 30일

<p><u>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u></p> <p><u>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u></p>	<p><u>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u></p>
---------------------------------------------------------------------------------------------	--------------------------------------

남해군 조례 제2313호

##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물섬 800리길”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말한다.

제3조(보물섬 800리길의 조성 및 관리) ① 군수는 보물섬 800리길(이하 “800리길”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800리길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800리길 구간의 연결 및 정비사업
  2. 800리길과 연계한 농촌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3.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제4조에 따른 간이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간이역 조성사업”이라 한다)
  4. 각종 대회·행사 개최 등 800리길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간이역의 설치 등) ① 군수는 800리길이 지나는 주요 지점에 복합시설물인 간이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역(이하 “간이역”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시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간이역의 이용 신청 등) ①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용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간이역 시설 중 공연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연장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제6조(이용료) ①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게스트하우스: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2. 야외판매시설: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별표에 따른 사용료
3. 공연장: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4. 소규모 놀이시설: 놀이시설 1대당 1회 이용 시 1,000원

② 군수는 간이역 시설 이용료를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이 경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날만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또는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18민주유공자 중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7.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8. 군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
- 9. 군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10. 65세 이상인 사람
- 11.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역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에 따른다.

- 1. 군의 행사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 2.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3.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제9조(간이역의 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간이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800리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800리길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 2. 간이역 조성사업
- 3.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
-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부위원장: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부위원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3. 관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축·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이역 명칭 · 위치 및 시설의 구성 (제4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시설구성		비고
동대만 간이역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1번지 일원	실내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음식점 58.14㎡</li> <li>○ 특산물판매점 106.02㎡,</li> <li>○ 안내소· 매표소· 화장실 208.68㎡</li> </ul>	연면적 : 642.78㎡  건축면적 : 378.69㎡
		실내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음식점 99.93㎡</li> <li>○ 게스트하우스 98.77㎡</li> <li>○ 물탱크실· 창고 71.24㎡</li> </ul>	
		실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50.8㎡</li> <li>○ 야외판매시설(그늘막)</li> <li>○ 소규모 놀이시설(미니 기차 등)</li> </ul>	
		그 밖의 시설	간이역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공용시설,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별표 2]

공연장 이용료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명칭	기준	금 액		비고
		평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야외공연장	4시간/1회	30,000	36,000	

※ 사용시간

- 오전 : 09:00 ~ 13:00(4시간)
- 오후 : 13:30 ~ 18:00(4시간 30분)
- 야간 : 18:30 ~ 23:00(4시간 30분)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하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 시 가산 기준

- 1시간 미만 : 다음 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다음 회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2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할 수 없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남남해036			
정 책 명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부서명	미래전략사업단		
	담당자명	신미옥	전화번호	055-860-360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6월 2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미래전략사업단)	<p>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중 간이역 조성사업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제11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는 조항을 명시함. 또한 성별통계 구축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함</p>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11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조항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단서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p>○ 해당조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 해당조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u></p>	<p>○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u>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u>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u></p>

	<p><b>※ 참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li> <li>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li>2. 위원회에는 <u>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li> <li>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ul>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p>2018년 7월 20일 까지</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07월 03일</p> <p style="text-align: center;"><b>남해군분석평가책임관</b> (담당자/연락번호 : 임미정/055-860-3850)</p> <p>미래전략사업단장 귀하</p>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8A경남남해036			
정책명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부서명	미래전략사업단		
	담당자명	신미옥	전화번호	055-860-3603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11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는 조항을 ‘ <u>위촉직 위원의 경우</u>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단서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반영 :</b></li> </ul> 제11조(위원회의 구성)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	-------------------------------------------------------------------------------------------------------------------------------------	-------------------------------------------------------------------------------------------------------------------------------------------------------------------------

2018년 07월 11일

**미래전략사업단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남해군 조례 제2314호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남해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라 함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추계(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군수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입법안의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의 등)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입법안의 비용추계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등)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의 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군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15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번 일련번호로 사용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포일 등)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가 게재된 군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등**

제17조(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자치법규의 정비)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와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재원조달방안

구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도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비용추계 상세내역

- .
- .
- .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5. 작성자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 예산증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세입	○			국비/도비/군비
	○			
	소계(a)			
세출	○			
	○			
	소계(b)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2. 미첨부 근거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129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힐링빌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힐링빌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40,585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 (2018.07.05)	
변경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39,219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 (2018.07.05)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	창선 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지구 면적 변경</li> <li>- 면적 : 140,585㎡ → 139,219㎡ (감 : 1,36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를 결정(변경)하고자 함</li> </ul>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172,323	172,323		
신설	16	힐링 빌리지	주거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	증)33,104	33,104		
신설	17	힐링 빌리지	관 광 휴양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	증)139,219	139,219		

나.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결정사유
합계			172,323	· 현대인의 화두로 떠오른 healing과 독특한 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 힐링 테마빌리지 조성
신설	16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33,104	
신설	17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39,219	

3.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분	면적(m <sup>2</sup>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33,104	33,104	100.0	
주거용지	-	증)6,822	6,822	20.6	
녹지용지	-	증)14,491	14,491	43.8	
소공원	-	증)301	301	0.9	
조성녹지	-	증)14,080	14,080	42.6	
보행자전용도로	-	증)110	110	0.3	
공공시설용지	-	증)11,791	11,791	35.6	
커뮤니티센터	-	증)4,362	4,362	13.2	
관리사무소	-	증)1,001	1,001	3.0	
공공하수처리시설	-	증)434	434	1.3	
도로	-	증)5,994	5,994	18.1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604	5,994	3	560	5,813	1	44	181	
중로	1	136	2,376	1	136	2,376	-	-	-	
소로	3	468	3,618	2	424	3,437	1	44	181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6	16	집산 도로	136	창선면 진동리 641-1도	창선면 진동리 653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157	창선면 진동리 653전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128	8	국지 도로	267	중로 2-6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49	4	국지 도로	44	소로 2-128	창선면 진동리 674전	일반 도로			

다)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류 6호선	· 신설 · B=16m, L=136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	소로2류 127호선	· 신설 · B=8m, L=157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	소로2류 128호선	· 신설 · B=8m, L=267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	소로3류 49호선	· 신설 · B=4m, L=44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2) 공원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소공원	소공원	창선면 진동리 653전	-	증)301	301		

나)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소공원	· 신설 · 위치 : 창선면 진동리 653전 · 면적 : 301㎡	· 주민들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반 시설로 설치

3) 하수도

가)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공공하수처리시설	창선면 진동리 674전	-	증)434	434		

나) 하수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하수 처리시설	· 신설 · 위치 : 창선면 진동리 674전 · 면적 : 434㎡	· 지구단위구역내 발생하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1	3,447	진동리 667 전	3,447	주거용지
2	2	3,375	진동리 668 입	3,375	
3	3	1,001	진동리 644 전	1,001	관리사무소
4	4	4,362	진동리 678 전	4,362	커뮤니티센터
5	5	434	진동리 674 전	434	공공하수처리시설
6	6	301	진동리 653 전	301	소공원
7	7	2,241	진동리 665 전	2,241	조성녹지
8	8	11,839	진동리 669 전	11,839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2	1, 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단,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하며 편의점은 제외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3	3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4	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사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1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6	6	용도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원에서 설치 할 수 있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형태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색채	힐링빌리지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건축가이드라인 작성중)	

남해군 고시 제2018 - 130호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면 : 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913	남해읍 북변리 141-1	남해읍 아산리 173-3	일반 도로		경고 제127호 (1977.01.27.)	
변경	소로	2	27	8	국지 도로	479	남해읍 북변리 141-1	남해읍 북변리 597-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49	7	국지 도로	1,015	고현면 대곡리 산84-1	고현면 대곡리 1149-4	일반 도로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7호선	소로 2-27호선	○ 노선축소 - B = 8m, L = 913m → 479m	○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노선축소
-	소로 3-49호선	○ 신설 - B = 7m, L = 1,015m	○ 기개설된 도로의 군계획시설 반영

나.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2	주차장	남해읍 차산리 643-4번지 일원	-	증)3,425.6	3,425.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주차장	○ 신설 A = 3,425.6㎡	○ 남해문화체육센터 이용객 증가 및 보물섬 시네마 개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금회 군관리계획 (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함

다.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7	금음가압장	설천면 금음리 770-1번지	96	감)96	-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신설	32	천하1수원지	미조면 송정리 1420 일원	-	증)12,303	12,303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금음가압장	○ 폐지 A=96㎡	○ 당초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금음가압장은 미집행된 군계획시설로서 변경된 수도공급계획상 불필요함에 따라 금회 군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하고자 함
32	천하1수원지	○ 신설 A=12,303㎡	○ 기조성된 수원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라. 공공·문화 체육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상주 초등학교	초등학교	상주면 상주리 1174 일원	11,669	증)1,339	13,008	경고 제2008-156호 (2008.04.24.)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상주 초등학교	○ 면적증가(증1,339㎡) A = 11,669㎡ → 13,008㎡	○ 현황여건을 반영하여 학교구역 변경

마. 공공·문화 체육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남면 소방파출소	소방 파출소	남면 당항리 1440-7 일원	2,025	감)475	1,550	경고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남면 소방파출소	○ 면적감소(감475㎡) A = 2,025㎡ → 1,550㎡	○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역변경

바. 보건위생시설(자연장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남면 자연장지	남면 죽전리 산141-2 일원	-	증)23,848	23,848		
신설	2	녹두산 자연장지	고현면 대사리 산8 일원	-	증)20,988	20,988		
신설	3	지족 자연장지	삼동면 지족리 산116 일원	-	증)14,020	14,02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남면 자연장지	○ 신설 A = 23,848㎡	○ 기개설된 자연장지의 군계획시설 반영
2	녹두산 자연장지	○ 신설 A = 20,988㎡	○ 기개설된 자연장지의 군계획시설 반영
3	지족 자연장지	○ 신설 A = 14,020㎡	○ 기개설된 자연장지의 군계획시설 반영

남해군 고시 제2018 - 131호

## 서면소재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서면소재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서면소재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치 : 남해군 서면 면소재지
4.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실버복지타운 조성(지상 3층, 연면적 1,155㎡)
    - 실버건강증진센터 조성(연면적 128㎡, 태양광 시설 9kw)
    - 스마트 CCTV 설치(5개소 설치)
    - 서상숲 치유쉼터 조성(바닥정비, 지압길, 황토포장, 야외 쉼터 조성 등)
    - 장항숲 장수공원 조성(바닥정비, 황토포장, 테크 정비, 정자 설치 등)
  - 지역경관개선
    - 서면 중심가로 정비(디자인 가로등, 보도블럭 정비, 승강장 정비 등)
    - 안전한 수변길 조성(안전휀스 설치 L=470m)
    - 실버건강 산책로 조성(바닥정비 L=2,000m, 디자인 쉼터 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부대비용 등
5. 총 사업비 : 5,856백만원 (국비 4,099백만원, 지방비 1,757백만원)
6.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8. 기본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지역개발팀, 055-860-3615)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18 - 132호

### 이동면소재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이동면소재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이동면소재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치 : 남해군 이동면 면소재지
4.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어울림 문화센터 조성 : 지상2층(연면적 510㎡)
    - 회전교차로 조성 : 교차로 설치 및 도로 정비(680㎡)
  - 지역경관개선
    - 문화 특화가로 조성(이동 중심가로 L=1,110 정비, 전선지중화 L=760m)
    - 1070 스토리 가로 조성(시장주변 L=260m,
    - 진입경관 특성화(이동우회도로 교차로구간 벽면부, 남측구간 뿌리마당 조성, 석평삼거리 구간 상징 조형물 및 열주 설치)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 경영지원, 부대비용
5. 총 사업비 : 5,920백만원 (국비 4,144백만원, 지방비 1,766백만원)
6.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8. 기본계획 열람 장소 : 관련 자료는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912호

**재산공개대상자 주식 매각 사실 공개 공고**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 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제1항에 따라 남해군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매각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개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1. 주식매각 신고자 : 남해군의회 의원 여동찬
2. 매각일자 : 2018. 7. 30.
3. 매각내역 : 세원셀론텍 / 14,675주



남해군 공고 제2018 - 934호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을 개정하여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안 제4조제2항)
  - 현행 : 기금의 존속기한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 개정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9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30, 팩스 055-860-37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경제과 투자유치팀(전화 055-860-32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기금의 조성 등)</u>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u>재원조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u>  <u>10년 이내로 한다.</u></p>	<p><u>제4조(기금의 조성 등)</u>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u>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u>  <u>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u>  <u>할 수 있다.</u></p>

남해군 공고 제2018 - 941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창선면204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7일

###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어촌도로(창선면204호선)개설공사』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지족~당저
- 사 업 량 : 도로 개설 L=1.1km, B=6.5m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열람공고 기간 : 2018. 8. 17. ~ 8. 31.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91-2번지 외 53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8. 8. 17. ~ 8. 31.

- 열람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1)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
-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남해군수(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지적측량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농어촌도로(창선면204호선)개설공사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군	면	리			대장 면적	예상편입 면적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내용	
1	남해	창선	지족	91-2	전	691	48		탁중용	사천시 서항인길 75 (향촌동)	사천축산업 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1817	설정계약	
2	남해	창선	지족	88	답	486	28		유지환	김해시 장유로330번길 5, 510호 (신문동,SG이너스)	사천축산업 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1488-1	설정계약	
3	남해	창선	지족	87	답	819	511		이정자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13	세창신세마을금고, 정성인		설정계약 설정계약	
4	남해	창선	지족	75-2	답	1,217	8		유지환	김해시 장유로330번길 5, 510호 (신문동,SG이너스)	사천축산업 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1488-1	설정계약	
5	남해	창선	지족	87-3	답	39	29		이정자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13	정성인	통영시 도천동437 만유빌라트 에이205	설정계약	
6	남해	창선	지족	84-2	답	1,156	554		장막선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1932번길 35				
7	남해	창선	지족	84-3	답	1,821	710	2분의1	하용기 외1인	남해군 이동면 남음로7번길 5-32				
	남해	창선	지족	84-3	답	0	0	2분의1	정동관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531번길 35				
8	남해	창선	지족	83	답	182	182		이방시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976				
9	남해	창선	지족	82	답	2,767	201		김태심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943				
10	남해	창선	당지	538	전	440	316		김연식	사천시 새동네1길109,2동 503호 (동동, 비룡그린파크)				
11	남해	창선	당지	537-1	임	2,534	227		장해란	전주시 완산구 을머리로101,103동505호 (효자동1가,신원리브힐@)	원광신용 협동조합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92-4(경원동3가)	설정계약	
12	남해	창선	당지	537	임	2,534	949		이인표	전라북도 정읍시 용동면 성철1길 23-20				
13	남해	창선	당지	536-4	답	188	188		이준우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58-12	창선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220	설정계약	
14	남해	창선	당지	536-2	답	863	192		이준우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58-12	창선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220	설정계약	
15	남해	창선	당지	534-2	답	694	210		장길준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1959-55				
16	남해	창선	당지	534-1	답	688	153		장길준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1959-55				
17	남해	창선	당지	517	답	1,504	595		장길준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1959-55				
18	남해	창선	당지	516	전	770	509		최원식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61				
19	남해	창선	당지	515-1	전	397	14		이현주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0, 1d동 106호(동대신동2가, 대청맨션)				
20	남해	창선	당지	산37-1	임	3,471	267		순흥안씨참찬공파 창선왕포문중 (대표인민순)	부산 사하구 승학로281번길 30-16 (고정동)				
21	남해	창선	당지	514	전	1,696	258		이현주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0, 1동 106호(동대신동2가, 대청맨션)				
22	남해	창선	당지	514-1	전	777	531		박분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88				
23	남해	창선	당지	511	전	2,265	218		김무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84번길 48-3				
24	남해	창선	당지	509-2	전	1,031	19		최천석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712-17,101동 802호 (염곡동,염곡한신1차@)				
25	남해	창선	당지	509-1	전	678	334		장상수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170, 101동 102호 (신광동, 현대@)				
26	남해	창선	당지	508	전	820	320		조호환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길48-10				
27	남해	창선	당지	507	전	1,494	323		장심순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길 70-10				
28	남해	창선	당지	504	전	833	119		정훈숙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길 60-1				
29	남해	창선	당지	산41-3	임	3,372	32		원철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99,102동 1004호 (잠실동, 잠실열스)				

# 남 해 군 공 보

2018년 8월 30일

제 615 호 (51)

## 농어촌도로(창선면204호선)개설공사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대장 면적	예상편입 면적	공유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내용	
30	남해	창선	당저	504-1	전	3,236	1,691	2분의1	강인수 외1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4로 23, 111동 704호(정관신도시휴먼시아1단지)				
	남해	창선	당저	504-1	전	0	0	2분의1	강미영	양산시 동면 계석로10, 7동 1303호(극동@)				
31	남해	창선	당저	산41-6	임	4,873	1,232		원철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99,102동 1004호 (잠실동, 잠실역스)				
32	남해	창선	당저	산41-18	임	4,002	269		조득웅	부산 영도구 대교14번길21-4 (물래동3가)				
33	남해	창선	당저	산41-20	임	2,081	288		박선호	부산 사하구 율곡대로103,3동219호 (대건@)				
34	남해	창선	당저	산41-17	임	1,683	234		홍영근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11번길 20(주안동)	남해군		압류	
35	남해	창선	당저	501-1	전	3,873	1,110		이도석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말길 114, 203동 403호(현대아파트)				
36	남해	창선	당저	501-3	전	30	13		장익조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길23				
37	남해	창선	당저	501-2	전	421	275		장익조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길23				
38	남해	창선	당저	502	답	873	2		탁배생	충남 보령시 신옥동1634-6산호@103-705				
39	남해	창선	당저	501	답	721	85		조정두	울산 남구 문수로295번길4,513호 (옥동, 금오그린@)	함안조씨 당저문중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433		매매예약
40	남해	창선	당저	500	답	883	15		조정두	울산 남구 문수로295번길4,513호 (옥동, 금오그린@)	함안조씨 당저문중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433		매매예약
41	남해	창선	당저	499	전	261	261		조정두	울산 남구 문수로295번길4,513호 (옥동, 금오그린@)	함안조씨 당저문중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433		매매예약
42	남해	창선	당저	498	답	927	48		이현일	부산 중구 대영로228번길 18-1, 101동 (영주동, 일신맨션)				
43	남해	창선	당저	492	전	942	614		김창재	부산 사하구 사하로 183, 103동 1502호 (괴정동, 괴정 협성휴포레@)				
44	남해	창선	당저	489-2	전	183	57		정미정	서울 강남구 광평로34길 55, 103동 602호 (수서동, 강남대시암포레)				
45	남해	창선	당저	489-1	전	676	376		곽연태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181-1				
46	남해	창선	당저	491-3	전	488	15		정미정	서울 강남구 광평로34길 55, 103동 602호 (수서동, 강남대시암포레)				
47	남해	창선	당저	491-4	전	266	244		곽연태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181-1				
48	남해	창선	당저	488	잡	489	31		곽연태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181-1				
49	남해	창선	당저	87-4	답	70	42		남해군					
50	남해	창선	당저	587	구	1,812	51		국(농림수산부)					
51	남해	창선	당저	571	구	856	56		국(농림축산식품부)					
52	남해	창선	당저	490-2	잡	516	284		국(기획재정부)					
53	남해	창선	당저	490-3	도	667	148		국(국토교통부)					
54	남해	창선	당저		공유수면		936							
		<b>합계</b>				<b>67,056</b>	<b>16,482</b>							

농어촌도로(창선면204호선)개설공사 편입 물건조사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남해	창선	오용	516	유자나무		20주	최원석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61	
2	남해	창선	당저	489-2	사철나무		5주	정미정	서울 강남구 광평로34길 55, 103동 602호 (수서동, 강남대시앙포레)	
3	남해	창선	당저	501-2	묘지		2기	장익조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길23	
4	남해	창선	당저	501-1	묘지		1기	이도석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앞길 114, 203동 403호(현대아파트)	
	<b>합 계</b>				<b>4건</b>					

남해군 공고 제2018 - 942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7일

###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개설공사』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상신~오용
- 사 업 량 : 도로 개설 L=1.90km, B=6.5m
-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열람공고 기간 : 2018. 8. 17. ~ 8. 31.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352-5번지 외 61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8. 8. 17. ~ 8. 31.

- 열람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1)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
-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남해군수(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지적측량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편입용지조서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개설공사 편입 토지조서

편입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공유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내용	
1	남해	창선	상신	352-5	전	86	64		김찬석	부산 동래구 안남로46,102동1909호 (낙민동,한신@)	창선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69	설정계약	
2	남해	창선	상신	352-3	전	1,123	288		김찬석	부산 동래구 안남로46,102동1909호 (낙민동,한신@)	창선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69	설정계약	
3	남해	창선	상신	349	전	793	190		김찬석	부산 동래구 안남로46,102동1909호 (낙민동,한신@)	창선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69	설정계약	
4	남해	창선	상신	348	답	1,064	28		전봉호	진주시 하대로142,106동1705호 (하대동,현대@)				
5	남해	창선	상신	347	답	1,048	183		손창희	경북 경주시 충효5길 13,203동 503호 (충효동,대우2차@)				
6	남해	창선	수산	102-1	임	2,651	542	100분의51	최진용외1인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8, 224호 (장기동,리베니체4차)				
						-	-	100분의49	최희용	경기 군포시 산본로299, 223동 101호 (금성동,주공@)				
7	남해	창선	수산	97	전	172	133		허윤구	진주시 지수면 송산길53번길 5				
8	남해	창선	수산	95	전	499	109		허윤구	진주시 지수면 송산길53번길 5				
9	남해	창선	수산	96	묘	218	132		박희오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동기부등본외
10	남해	창선	수산	98	전	764	422		임종명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131번길6-6				
11	남해	창선	수산	92	전	962	40	3분의1	박두영외2인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131번길28-4				
						-	-	3분의1	박소두	부산 연제구 연미로13번길16, 101호 (연산동,중경@)				
						-	-	3분의1	박두선	부산 동래구 명안로63번길 24(명장동)				
12	남해	창선	수산	93	전	1,213	411		양철용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76				
13	남해	창선	수산	94-2	전	1,028	1,028		장재봉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 189				
14	남해	창선	수산	94-1	전	942	767		강영순	부산 동래구 차밭골로43-10(은선동)				
15	남해	창선	수산	87	전	542	230		이현이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131번길 38				
16	남해	창선	수산	86	전	853	519		김봉두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131번길 46-1				
17	남해	창선	수산	88-1	전	1,408	100		배영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32				
18	남해	창선	수산	84	전	869	598		김덕민	진주시 외곡길38-9(봉래동)	김숙자	진주시 집현면 한치골길44번길104	설정계약	
19	남해	창선	수산	85	답	1,425	227		윤수경	경기 의왕시 모락로89-15,106동1901호 (오전동,해모로@)			가처분	
20	남해	창선	수산	83	전	909	54		양정용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80				
21	남해	창선	수산	75-1	답	899	488		윤수경	경기 의왕시 모락로89-15,106동1901호 (오전동,해모로@)			가처분	
22	남해	창선	수산	75-2	답	1,841	697		윤수경	경기 의왕시 모락로89-15,106동1901호 (오전동,해모로@)			가처분	
23	남해	창선	수산	74	전	849	140		윤상식	서울 성동구 뚝레3가길 5-6(성수동1가)				
24	남해	창선	수산	73	전	410	311		김종신	진주시 진양호로97번길 19-6, 101동105호(평거동, 한보타운)				
25	남해	창선	수산	72-1	전	879	78		박희영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33, 206동603호 (괴법동,괘법2차한신@)				
26	남해	창선	수산	61	전	1,540	227	2분의1	김달수외1인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				
						-	-	2분의1	최은희	진주시 서장대로235, 201동 503호 (이현동, 주공@)				
27	남해	창선	수산	60	전	651	125		배성주	사천시 벌리3길 8 (벌리동)				
28	남해	창선	수산	59	대	836	23		이진영	경남 사천시 서동길 5-12(서동)				
29	남해	창선	수산	55-1	답	2,003	10		학교법인창선학원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170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공유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내용	
30	남해	창선	수산	55-2	염	101,193	182		학교법인창선학원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170				
31	남해	창선	오동	1281-21	대	20	20		김옥균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32	남해	창선	오동	1282	전	109	20		김동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창선새마을 금고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195-3	실질계약	
33	남해	창선	오동	1281-18	대	979	299		김동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창선새마을 금고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195-3	실질계약	
34	남해	창선	오동	산2-34	임	1,507	138		조승현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1,131동1803호 (용호동,엘지메트로시티)				
35	남해	창선	오동	산2-5	임	6,945	1,043		㈜승현	부산 해운대구 신수춘로9,12동 205호 (반여동,황자@)				
36	남해	창선	오동	산2-31	임	592	76		김동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37	남해	창선	오동	1254-1	전	701	457		조승현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1,131동1803호 (용호동,엘지메트로시티)				
38	남해	창선	오동	1254	전	407	71	34분의6	김차선외8인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북4길11, 509호 (자산경남상가@)				
						-	-	34분의6	장점길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199번길17-2				
						-	-	34분의1	장영녀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204번길 27(부암동)				
						-	-	34분의4	장길두	김해시 삼안로207, 504동 205호 (삼왕동, 동성@)				
						-	-	34분의4	장창길	부산 사하구 제석로95번길 22-5, 102동1307호 (당리동,우림그린앤선)				
						-	-	34분의4	장창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시창길29, 204호(산호동)	박성규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120	가압류	
						-	-	34분의1	장명숙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95,204동 504호 (반림동,트리비앙@)				
						-	-	34분의4	장규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30, 108동 1003호 (양덕동,메트로시티)				
						-	-	34분의4	장미숙	부산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57, 205동 1205호(금곡동,유림@)				
39	남해	창선	오동	1253	답	440	386		이방순	경남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99번길 15				
40	남해	창선	오동	산2-14	임	3,211	181		장의남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199번길 26				
41	남해	창선	오동	1252	답	2,043	1,089		장택규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170번길 17 (반지동)	새남해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711-8	실질계약	
42	남해	창선	오동	1246	답	878	297		정서진	부산 사상구 주암로164, 702호 (주래동,한영빌라)				
43	남해	창선	오동	1245	답	879	500		정창숙	진주시 대신로475번길 16-5, 101동 1306호(초전동,창구@)				
44	남해	창선	오동	1243-1	답	801	350		정창숙	진주시 대신로475번길 16-5, 101동 1306호(초전동,창구@)				
45	남해	창선	상신	353	도	15,406	526	국	국(건설교통부)					
46	남해	창선	상신	1-1	답	8,065	14	관	남해군					
47	남해	창선	상신	347-2	잡	271	27	관	남해군					
48	남해	창선	상신	347-1	제	332	260	국	국(국토교통부)					
49	남해	창선	상신	10-1	제	2,120	1,700	국	국(국토교통부)					
50	남해	창선	상신	10-2	잡	90,724	246	국	국(재무부)					
51	남해	창서	수산	103-1	제	144	144	국	국(국토교통부)					
52	남해	창선	수산	101-3	전	22,064	114	국	국(국토교통부)					
53	남해	창선	수산	551	제	5,921	2,49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54	남해	창선	오동	550	구	5,940	4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55	남해	창선	오동	1343	구	14,151	6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56	남해	창선	오동	1243-3	답	190	88	도	경상남도					
57	남해	창선	오동	1242-2	도	50	10	도	경상남도					
58	남해	창선	오동	1243-2	도	56	19	관	남해군					
59	남해	창선	오동	1243-4	답	143	66	도	경상남도					
60	남해	창선	오동	산4	임	115	1	도	경상남도					
61	남해	창선	오동	산4-1	도	997	100	도	경상남도					
62	남해	창선	오동	1242-1	답	390	49	도	경상남도					
			합계			316,261	19,244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개설공사 편입 물건조사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주소	
1	남해	창선	상신	353	한진주		2주	한국전력공사			
2	남해	창선	상신	350-1	한진주		1주	한국전력공사			
3	남해	창선	상신	349	한진주		1주	한국전력공사			
4	남해	창선	상신	348	간이화장실		2ea	천봉호	진주시 하대로142, 106동1705호 (하대동, 현대@)		
5	남해	창선	상신	352-3	뽕나무		3주	김찬석	부신 동래구 안남로46, 102동1909호 (낙민동, 한신@)		
6	남해	창선	수산	73	동백나무		4주	김종신	진주시 진양호로97번길 19-6, 101동105호(평거동, 한보타운)		
7	남해	창선	수산	73	묘지		2기	김종신	진주시 진양호로97번길 19-6, 101동105호(평거동, 한보타운)		
8	남해	창선	오용	1281-18	가옥	블록/슬라브	1	김동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9	남해	창선	오용	1281-18	배나무		1주	김동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10	남해	창선	오용	1281-18	오가피		1주	김동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11	남해	창선	오용	1281-18	소나무		1주	김동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12	남해	창선	오용	1282	벗나무		2주	김동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13	남해	창선	오용	1282	소나무		1주	김동권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77-55		
14	남해	창선	오용	산2-5	동백나무		20주	(주)송희	부신 해운대구 신수촌로 9, 12동 208호		
15	남해	창선	오용	산4-1	단풍나무		8주	경상남도			
16	남해	창선	오용	산4-1	한진주		4주	한국전력공사			
<b>합계</b>							<b>16건</b>				

남해군 공고 제2018 - 943호

### 공시송달 공고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 명칭 :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사업 목적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경상남도 남해군수
  - 2) 주 소 : 경상남도 남해읍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라. 사업 시행 면적 및 규모
  - 1)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7번지 일원
  - 2) 사업면적 : 10,970㎡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7번지 외 14필지 / 8,286㎡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기간 및 장소 : 2018. 8. 20. ~ 9. 3. (14일간)/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8년 9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현황				비고
					소유자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8	도로	1983	남해읍 차산리 141	김홍0			1/43 공유
2					남해읍 차산리 157	하명0			1/43 공유
3					남해읍 차산리 155	김홍0			1/43 공유
4					남해읍 차산리 728	김홍0			1/43 공유
5					남해읍 차산리 156	김홍0			1/43 공유
6					남해읍 차산리 182	박임0			1/43 공유
7					남해읍 차산리 181	박계0			1/43 공유
8					남해읍 차산리 177	김종0			1/43 공유
9					남해읍 차산리 308	이영0			1/43 공유
10					남해읍 차산리 293	송윤0			1/43 공유
11					남해읍 차산리 321	박동0			1/43 공유
12					남해읍 차산리 541	이관0			1/43 공유
13					남해읍 차산리 539	이성0			1/43 공유
14					남해읍 차산리 534	이도0			1/43 공유
15					남해읍 차산리 537	박계0			1/43 공유

# 남 해 군 공 보

2018년 8월 30일

제 615 호 (61)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현황				비고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6	경상남도 남해읍 아산리	산144-8	도로	1,983	남해읍 차산리 528	신용0			1/43 공유
17					남해읍 차산리 496	이남0			1/43 공유
18					남해읍 차산리 496	최정0			1/43 공유
19					남해읍 차산리 435	박재0			1/43 공유
20					남해읍 차산리 521	박정0			1/43 공유
21					남해읍 차산리 523	이익0			1/43 공유
22					남해읍 차산리 517	이성0			1/43 공유
23					남해읍 차산리 494	박금0			1/43 공유
24					남해읍 차산리 514	이영0			1/43 공유
25					남해읍 차산리 163	김갑0			1/43 공유
26					남해읍 차산리 171	김홍0			1/43 공유
27					남해읍 차산리 301	장희0			1/43 공유
28					남해읍 차산리 492	최동0			1/43 공유
29					남해읍 아산리	1078-3	답	7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로
30	남해읍 아산리	산 144-6	도로	397	남해읍 북변리 559	황종0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126번길 3, 401호	황영0	소유주 손자
31					남해읍 북변리 551	김상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3길 39, 201호(연희동)	김환0 (아들)	소유주 아들
32							창원시 진해구 중초로9번길 38(경화동)	김형0 (손자)	소유주 손자
계				2,454㎡		32인			

남해군 공고 제2018 - 944호

### 양식어업 면허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14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18.08.18 2028.08.17 (10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18-1	이광식 외 1명 (최인순)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07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08.08.18 2018.08.17 (10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18-1	이광식 외 1명 (최인순)	재개발

※ '18/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8 - 954호

## 남해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가. 군도 및 면소재지 도로 등에 국도 가변차로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변속차로를 설치하고 있어 도로 여건에 맞는 허가기준 마련 필요
  - 나.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도로에 대하여 적용제외 규정마련 필요  
(지구단위계획 해제 면소재지 등)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등을 설명(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 적용범위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연결허가 기준 및 금지구간 등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변속차로 등의 포장,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안 제7조 내지 제 13조)
  - 마. 변속차로 외에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 변속차로 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 1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년 9월 1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315,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자세한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시지역 내 도

로(이하 “군도 등” 이라 한다)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 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군도 등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이하 “변속차로 등” 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축척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 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군도 등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에게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

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군수는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 이라 한다)에서 군도 등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군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군도 등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군도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 ② 군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 중 면소재지 등 건축물이 밀집되어 변속차로 등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시공 중인 군도 등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도 등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군도 등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군도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군도 등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

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이하 “5가구 이하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군도 등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군도 등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 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설치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 등의 진입로로서 가각(街角) 정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視距)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인근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0.3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960호

### 양식어업 면허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15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이동 초음	50,000	2018.08.23 2028.08.22 (10년)	진주시 향교로17번길 3	김태수 외 1명 (하도엽)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08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이동 초음	50,000	2008.08.23 2018.08.22 (10년)	진주시 향교로17번길 3	김태수 외 1명 (하도엽)	재개발

※ '18/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8 - 966호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8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남 해 군 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광천천	광천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79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974	1,040	2,136(양안)	수요커브교 2개소 슬라브교 5개소	2018.03.	2021.03.	재해 예방	토지 및 지장물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소 하 천 정 비 시 행 계 획

#### 1. 시행계획의 개요

소하천 명	사업 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 효과
	공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광천천	광천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산41-1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974	1,040	2,136 (양안)	수로암거 2개소 슬라브교 5개소	2018.03.	2021.03.	3,380	재해 예방

#### 2.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광천소하천 정비공사

나.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소하천의 정비와 관리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 개요
- 축제공 : 흙쌓기 9,017m<sup>3</sup>, 흙깎기 15,307m<sup>3</sup>, 터파기 6,585m<sup>3</sup>
- 호안공 : 전석쌓기 7,327.5m<sup>3</sup>, 석축쌓기 93.5m<sup>3</sup>
- 구조물공 : 수로암거 2개소, 슬라브교 5개소
- 하상보호공 : 취입보 및 여울 2개소, 하상보호공 4개소, 수문 2개소
- 배수공 : 팽형강관 60m, 집수정 19개소, L형측구 31m, 개거 486m
- 상수공 : 관로(Ø150) 53m
- 포장공 : 2,445.5m<sup>2</sup>, 도로경계석 77m
- 친수공 : 등의자 13개소, 각종 운동기구 3개소, 노랑꽃창포 5,148본
- 부대공 : 1식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라.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 예정일 : 2018년 3월
- 준공 예정일 : 2021년 3월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파.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5. 공람기간 : 2018. 8. 24. ~ 2018. 9. 7.(14일)

6. 공람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293)

7.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973호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수기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9월 1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864, 팩스 055-860-387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평생교육팀(전화 055-860-38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lt;생략&gt;                      1. ~ 4. &lt;생략&gt;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lt;현행과 같음&gt;                      1. ~ 4. &lt;현행과 같음&gt;                      ② &lt;삭제&gt;</p>

남해군 공고 제2018 - 975호

##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구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복 지원 목적 및 정의
- 교복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규정
- 교복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이종지급 등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남해군청  
행정과 평생교육팀
- 연락처 : 전화055-860-3864, 팩스055-860-3879,  
e-mail : xxx1x@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때나 통학할 때 입을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제2호 및 제3호의 학력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군수는 학교 배정일 이전에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른 교복 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 신청기간은 매년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②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